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09호
2. 발 의 자 : 김경훈 의원 등 19명
3. 발의일자 : 2025년 5월 23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원생 및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교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2.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5. 학교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6.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6. 3. ~ 6. 7. (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김정훈 의원 등 19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70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대전 초등학교생 사망 사건¹⁾을 계기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및 「초·중등교육법²⁾」에서는 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기준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1) 보도자료 : ‘대전 초등학교생 8살 어린이 피살…교사 범행 자백’ (KBS 뉴스, 2025.2.10.)

2) 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개별 법령상 근거를 바탕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본 준수사항 안내³⁾’를 작성 및 배포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학교에 대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5년에는 기존 지원 대상인 초·중·고교에 더해 유치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⁴⁾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를 늘리고 화질을 개선하여 건물 내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 범위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1] 최근 3년간 CCTV 예산 지원 현황⁵⁾

구분	예산구분	지원예산	지원 실적
2022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15.4억	- 317교 지원, 학교별 지원금액 차등 (초102교, 중102교, 고102교, 특수8교, 각종3교)
2023	자체재원	12억	- 231교 지원, 학교별 지원금액 차등 (초72교, 중86교, 고70교, 특수1교, 각종2교)
2024	자체재원	13억	- 192교 지원, 학교별 지원금액 차등 (초56교, 중75교, 고58교, 특수2교, 각종1교)

○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3곳에서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2] 시도교육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⁶⁾

지역	조례명	제정 시기 (최초 공포일)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2023.12.2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2022.04.20.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2020.05.19.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본 준수사항 안내’(안전총괄담당관, 2024.2.27.)

4) ‘2025년 CCTV 설치 지원 계획(안)’(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2025.3.) p.4

5) 위의 자료, p.9

6)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검색한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안 제6조에서 CCTV 설치·운영 계획 수립과 홈페이지 게시, 안 제7조에서 의견수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및 관리, 안 제9조에서 관리책임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각각 비밀유지 의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정보주체”, “처리” 등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선 안 제2조제1호는 “학교”의 정의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완해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어는 주로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준용⁷⁾한 것으로,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용어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 내용상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⁸⁾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상 용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통일함은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책무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에게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학교장에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제2항),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3항).
- 우선 안 제1항은 조례상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임의규정인바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한편 안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3조9)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의무 및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보장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춘 적절한 규율로 사료됩니다.

4)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학교장에게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
- 9)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범위(안 제1항)와 이용에 있어 제한사항을 규정(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우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제16조¹⁰⁾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상 명시하는 것으로, 영상 정보가 지닌 민감성과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법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10가지 예외적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제3조제2항 및 제18조¹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책무 이

10)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11)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바,

안 제5조제2항은 이와 같은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할 의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안 제1항각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안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안 제6조제1항각호에서는 설치·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9가지로 세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법 시행령 제25조상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학교 단위에서의 영상정보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례안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u>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u>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u>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례안
5.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 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9.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 중 안 제6조제1항제7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 법 제18조제4항¹²⁾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을 학교장이 수립하는 설치 운영 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학교 내 민감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인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은, 법 시행령 제31조¹³⁾에 의한 홈페이지 게재 의무에 따른 적법한 조치일 것입니다.

12)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3)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안 제6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의 알 권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6)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는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 제25조제3항¹⁴⁾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¹⁵⁾은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영상정보 수집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계획할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과 수용성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되는바, 동 조례안에 규정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7조가 현행 「초·중등교육

14)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5)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법」보다 절차를 가중하여 학교의 부담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축시킬 우려를 제시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¹⁶⁾

○ 이러한 교육청의 의견은, 실무적인 절차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¹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¹⁸⁾에 따라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수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본 준수사항 안내¹⁹⁾’에서는 의견수렴의 법적 근거로 법 제25조제3항을 제시하고 있고,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학교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²⁰⁾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상, 조례에서 해당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 제

16)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6.4.)

17)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의 장이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기본 준수사항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2024.2.27.) p.3

20)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인바, 수정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고정형 영상정보기기의 실질적인 운영·관리와 관련된 학교장의 구체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주변 조정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안 제1항), 정기적인 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안 제2항)하며 점검 및 조치일지를 작성(안 제3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정보 수집 및 녹음기능 사용을 제한(안 제4항)하고,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됨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5항).

○ 우선 안 제1항은 법 제3조제3항²¹⁾에 따른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보의 일환이며, 안 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29조²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²³⁾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또한, 안 제4항은 법 제25조제5항²⁴⁾에 규정된 내용을 재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권 보

21)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8.(생략)

24)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5항은 법 제25조제4항²⁵⁾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²⁶⁾의 세부기준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 종합적으로 안 제8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으로, 의무 부과에 근거가 관련 법령에서 확인되는바 법률상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 관리책임자 등 교육에 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항).
- 여기서 교육 대상자로 명시된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영상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도 포함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5)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 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자칫 사생활 침해 또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무임을 고려한 것으로, 현장의 인식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특히 이러한 교육은 법 제59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관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바, 안 제9조는 개인정보 보호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춘 예방 중심의 규율 장치로서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9)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자에 대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여기서 ‘업무에 참여한 자’란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기술지원업체 관계자 등 영상정보 처리에 간접 관여하는 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이며,

CCTV 영상이 외부 유출 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및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영상정보 접근자에게 엄격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할 것입니다.

- 이러한 비밀유지에 관한 제한은 법 제3조²⁷⁾ 및 제59조²⁸⁾ 등 법령에서 강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조항은 영상정보

27)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의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고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적절한 통제 장치로 사료됩니다.

9)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영상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있는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영상정보의 외부 제공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 및 기관은 법 제19조²⁹⁾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제한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